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3804 용역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이춘산
변 론 종 결 2020. 1. 31.
판 결 선 고 2020.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피고와 토목측량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측량설계구분: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토목측량설계용역
2. 대지위치: 1) 연천군 D, E(30,000㎡ 9,075평 이하)
2) 연천군 F 일원(10,000㎡ 3,000평 이하)
3. 측량설계개요:
 - (1) 지형현황측량용역
 - (2) 군사협의설계용역
 - (3) 산지전용측량설계용역
 - (4) 개발행위측량설계용역
 - (5) 산림재적조사용역
 - (6) 도시계획심의용역
 - (7)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대행의뢰)
 - (8)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대행의뢰)-국토법
 - (9) 재해성검토용역(대행의뢰)-산지관리법
4. 계약금액: 일금 일억 원정(₩100,000,000) 부가세 별도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2017. 7. 20.부터 측량설계용역완료시(약 5개월)까지로 한다. 단 원고가 피고에게 측량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여건 및 자료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용역기간을 수행하며, 단 행정처리 절차상 해당관청에 의한 보완사항이 있을시 용역기간이 변동됨.

제3조(용역범위)

-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측량설계개요에 따른 모든 측량설계용역 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및 기타 필요 업무로 한다.
- ② 위 ①항의 기타 필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 해당관청 개발행위 업무 협의
 - ㉡ 군사 협의 설계용역
 - ㉢ 토목설계 및 원고가 요청하는 자료 준비
- ③ 용역 진행시 관할청에서 보완요청 내용에 대해서 피고는 즉시 자료를 준비하여 원고

에게 통보를 하고, 해당 관청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재협의를 한다.

제4조(용역비의 지불방법)

설계업무의 용역비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용역비를 분할하여 지불할 경우는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불시기	지불금액	공종	비고
용역계약시	40,000,000	현황측량/설계착수시	40%
중도결제금	30,000,000	군사협의 통보시	30%
용역완료시	30,000,000	용역완료시	30%
합계	100,000,000		부가세별도

(농협) (G) 예금주: C

나.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7.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하신 「H, I 태양광발전소」 건에 대한 관련법 의견조치와 관련하여, J부대(28사단) 군보심의결과(부동의)를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은 군보심의결과 부동의 처리되어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관할 행정청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J부대(28사단) 군보심의결과 부동의로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 해제사실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40,000,000원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0원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는 민법 제 398조 제2항에 의하여 적절히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 대상 토지 지상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군보심의결과 부동의로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상 용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 전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에 "원고는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부동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계약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용역에 관한 부분까지 계약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용역계약 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해당 공종을 '현황측량/설계착수 시'로 정하였고, 을 제1호증(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황측량을 하고 설계도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게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0원 전부를 몰취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그 밖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진행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미 수령한 계약금 40,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도면을 급조하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고가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도면 등은 얼마든지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도면으로 이러한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40,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은